

서울특별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심사보고서

의안 번호	1876
----------	------

2024년 6월 17일
환경수자원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24년 5월 27일, 김경훈 의원
나. 회부일자 : 2024년 5월 30일
다. 상정일자 : 제324회 정례회 서울특별시의회 제3차 환경수자원위원회
(2024년 6월 17일 상정, 의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 [제안 설명자: 김경훈 의원]

가. 제안이유

- 「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8조의2의 시행에 따라 인공구조물로 인한 야생동물의 피해방지 조항을 정비하고, 같은 법 시행규칙을 반영하여 인공구조물의 범위 및 설치기준을 규정하는 한편, 야생조류에 관한 규정은 별도의 조례로 지정하기 위해 중복된 부분을 삭제하고자 함.

나. 주요골자

- 1) 인공구조물의 범위 및 설치기준을 규정함(안 제20조 제2항)
- 2) 야생조류에 관한 세부 규정을 삭제함(안 제20조 제3항 및 제4항 삭제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(비대상사유서) 참조

다. 기 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 참조

4. 전문위원 검토보고

가. 개요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「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8조의2에 따라 인공구조물로 인한 야생동물의 피해방지 조항을 정비하고, 법 시행 규칙을 반영하여 인공구조물의 범위 및 설치기준을 규정하는 한편, 야생 조류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조례로 제정하기 위해 중복된 부분을 삭제하는 것임.

나. 검토의견

- 동 조례는 「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)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야생생물과 그 서식 환경을 체계적으로 보호·관리하고 생물다양성을 증진시켜 사람과 야생생물이 공존하는 자연환경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2022년 10월 제정¹⁾되었음.
- 제정 당시 2022년 6월 개정²⁾된 법의 내용을 일부 반영하여 제5장(인공구조물로 인한 야생동물의 피해방지) 제20조 및 제21조에서 ‘인공구조물로 인한 피해방지 및 실태조사’³⁾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게 되었으나, 제20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는 “야생조류”에 대한 사항만을 정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피해가 많은 조류에 한하여 별도의 조례 제정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음.
- 이에 따라 본 조례안은 야생조류에 한해 세부적으로 충돌 방지를 규정하는

1) 「서울특별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」 [시행 2022. 10. 17.]
[서울특별시조례 제8480호, 2022. 10. 17., 제정]

2) [시행 2022. 12. 11] [법률 제18908호, 2022. 6. 10., 일부개정]

3) 제20조(인공구조물로 인한 야생동물의 피해방지), 제21조(인공구조물로 인한 야생동물의 피해 실태조사)

「서울특별시 야생조류 충돌 방지 조례안」과 중복된 부분을 삭제하고, 필요한 부분은 수정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이견은 없음.

- 세부적으로 안 제20조제2항은 동 조례 제정 이후 마련된 법 시행규칙 제7조의2를 준용하여 ‘인공구조물’의 범위 및 설치기준을 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음.

5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6. 토론요지 : 생략

7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8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9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서울특별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.

- ② 제1항에 따른 인공구조물의 범위 및 설치기준은 「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7조의2를 따른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0조(인공구조물로 인한 야생동물의 피해방지) ① (생 략)</p> <p>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청장 및 사업자에게 야생조류 충돌 저감을 위한 대책을 요구할 수 있다.</p> <p>1. 「환경영향평가법」 제9조 및 제22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,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과 「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」 제3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</p> <p>2. 개발사업 등의 시행으로 인하여 조류 이동경로 등에 심각한 영향이 우려될 경우</p> <p>③ 시장은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심의·자문 시 야생조류 충돌 저감조치 반영 여부를 심의·자문하여야 한다.</p> <p>④ 시장은 인공구조물에 의한 조류충돌 피해 저감을 위한 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공공시설물 설치·운영에 관한 지침을 마련·배포하고 운영할 수 있다.</p>	<p>제20조(인공구조물로 인한 야생동물의 피해방지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제1항에 따른 인공구조물의 범위 및 설치기준은 「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7조의2를 따른다.</p> <p><삭 제></p> <p><삭 제></p>